

정보보호 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 ISSUE REPORT

| 국내 개인정보보호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자격제도 현황



CONTENTS



요약	03
I. 논의 배경	06
II. 국내 개인정보보호 관련 전문인력 양성 현황	12
III. 국내 개인정보보호 관련 자격제도 현황	15
IV. 시사점 및 제언	21
참고문헌	23

본 보고서의 내용은 상업적 용도로 무단 사용할 수 없으며,
비상업적 용도로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고자 할 경우 출처를 반드시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의 연락처로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보호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사무국 02-6748-2011, 2039 | mhr0327@kisia.or.kr

본 이슈리포트는 한라대학교 AI정보보안학과 김순석 교수가 작성하였습니다.



□ 논의 배경

- 개인정보보호 전문인력에 대한 공공기관들과 민간기업들의 수요 증가 및 개인정보보호법 2차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전문성·독립성 강화 요구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주관 2021년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 결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어려움은 '전문인력 부족'이 73.8%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2024년 3월 15일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 2차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책임자가 전문성과 독립성을 기반으로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자격 요건 강화

□ 국내 개인정보보호 관련 전문인력 양성 현황

- (정보보호 부문) 대학·대학원 정규교육과정 운영에 있어 전문대학 7개, 일반대학 45개, 대학원 58개(총 110개 학과), 학생 총 8,245명 재적 중이며 2022년부터 5년간 10만 사이버보안 인재양성 사업 계획 발표
- (개인정보보호 부문) 2022년부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주관하여 시행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분야 혁신인재양성사업 일환으로 서울여대를 비롯한 5개 대학이 유일하게 개설·운영중

□ 국내 개인정보보호 관련 자격제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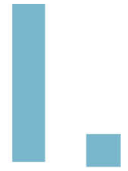
- (국가자격 운영 현황)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분야의 국가자격은 현재 없으며, 유사 분야로 정보보안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정보보안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이 운영 중
- (민간자격 운영 현황) 현재 '개인정보보호' 및 '일반 정보보호'분야의 공인 민간자격은 없으며, 127개의 등록 민간자격(개인정보관리사(CPPG), 개인정보보호사 등)만 존재('24.2 기준)
 - 이중 가장 활용도가 높은 개인정보관리사(CPPG)의 경우 개인정보 영향 평가 수행인력 및 ISMS-P 인증심사원 자격요건으로 포함하고 있으며, 현재 기업(300여개)에서 채용 우대 중

□ 개인정보보호관련 NCS(국가직무능력표준) 운영 현황

- 개인정보보호 분야는 현재 정보통신(대분류) » 정보기술(중분류) » 개인정보보호(소분류)로 운영 중
- 현재 세분류로 개인정보보호관리운영, 개인정보가명익명처리, 개인정보인증평가 3개 직무가 개발되어 있으며 현재 지속적으로 새로운 직무들을 개발 중

□ 시사점 및 제언

- **(전문인력 양성 부문)** 지난 2월 16일자 디지털데일리 보도자료에 따르면 현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개인정보 학사 전공 운영 및 석·박사 전공 개설, 가명정보 안전 활용에 필요한 전문가를 양성하자는 취지로 예비자, 실무자, 전문가 등 정규 과정을 운영하고 기업 및 대학에서 관련 특강 전략을 마련, 이행할 방침이라고 밝힘
 - 따라서 향후 상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전략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에 특화된 체계적인 전문인력을 양성해 줄 것을 기대
 - 정보보호 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는 정부가 추진하는 인력양성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인력 현황 및 이슈의 정확한 파악과 함께 인력 미스매칭 해소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산업 내 실질적인 인력현안 해결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 **(자격제도 부문)** 앞서 언급한 2월 16일자 디지털데일리 보도자료에 따르면 현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개인정보보호에 특화된 국가자격 제도 도입에 대해 연구 중이라고 밝힌 바 있음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중심으로 기존 등록 민간자격 가운데 NCS, 산업계 수요 부응 정도, 검정 실적 혹은 수준 등을 고려하여 공인자격으로 전환하거나 새로운 국가기술자격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전문인력 수요에 발 빠르게 대처하기 위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
 - 정보보호 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는 산업 내 직무변화를 빠르게 파악하는 동시에, 우수 인력 성장의 기반이 되는 자격제도가 체계적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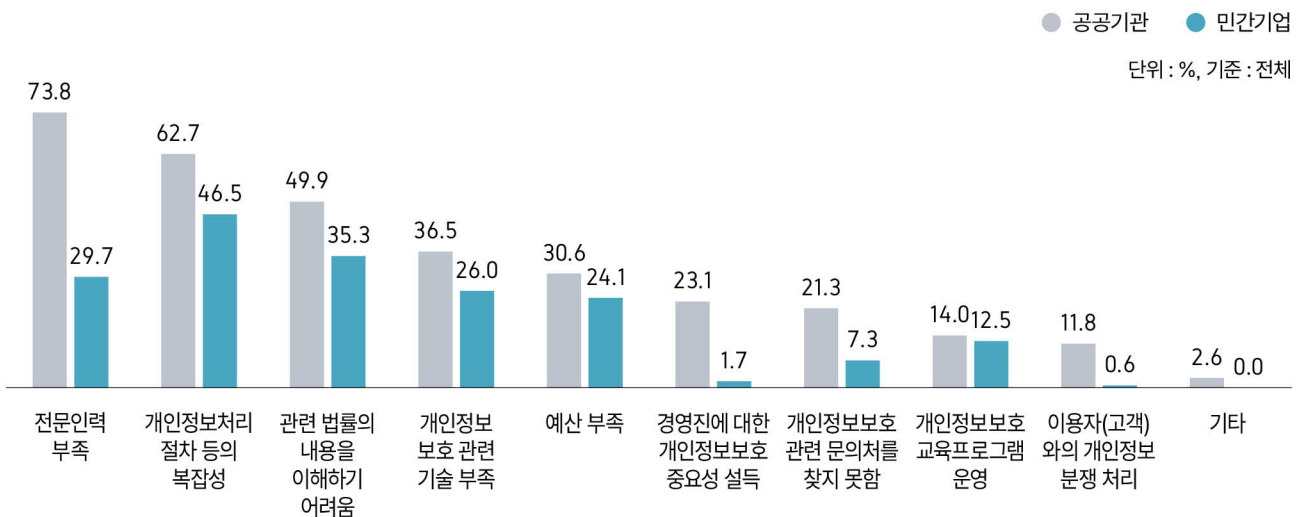
논의 배경



I 논의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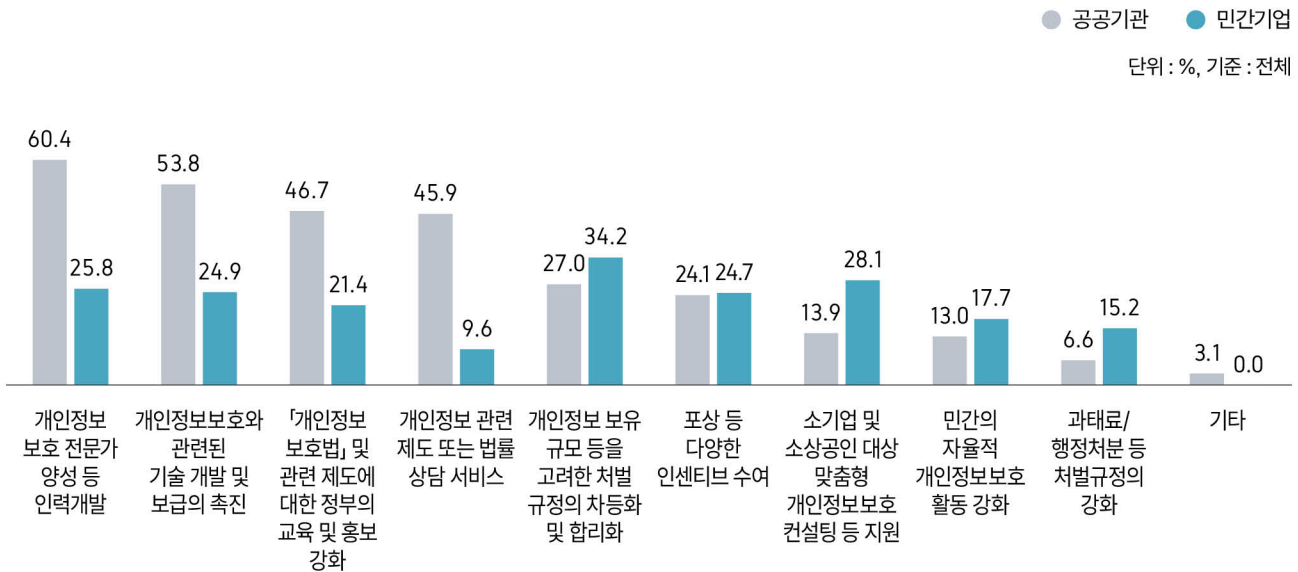
1. 개인정보보호 전문인력에 대한 공공기관들과 민간기업들의 수요

- 지난 2021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공공기관 1,500개, 민간기업 3,000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2021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 공공기관의 96.9%, 민간기업의 93.9%는 개인정보보호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그중 각각 78.9%와 78.1%는 매우 중요하다고 답하였음
 - 한편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어려움은 '전문인력 부족'이 73.8%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민간기업 또한 '개인정보 처리 절차 복잡' (46.5%)에 이어 '전문인력 부족'이 29.7%로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그림 1] 참조)



[그림 1] 개인정보보호 업무 관련 애로사항(복수응답)

- 아울러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우선되어야 할 정부의 정책을 묻는 문항에 대해 공공기관에서는 '전문인력 양성'이 60.4%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민간기업의 경우 25.8%로 세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그림 2] 참조)



[그림 2] 개인정보처리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정책 우선순위(복수응답)

2.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전문성·독립성 강화¹⁾

- 2024년 3월 15일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 2차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Chief Privacy Officer)가 전문성과 독립성을 기반으로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특정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 CPO의 자격 요건을 강화
 - (적용대상 개인정보처리자) ① 연 매출액 또는 수입이 1,500억원 이상인 자로서, (i) 10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 또는 (ii) 5만명 이상 정보주체의 민감·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 ② 재학생 수 2만 명 이상인 대학(대학원 재학생 수 포함), ③ 대규모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상급종합병원, ④ 공공시스템운영기관
 - (CPO 자격 요건) 개인정보보호·정보보호·정보기술 경력*을 총 4년 이상(개인정보보호 경력 2년 필수) 갖추고 있는 사람**을 CPO로 지정할 것
 - * 단, 동일 기간에 두 가지 이상 업무가 중복되는 경우 하나의 경력만 인정
 - ** 시행 당시 CPO로 지정되어 있는 사람의 경우 '26. 03. 14.까지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자격 인정에 관한 고시 [별표 1])

1) 출처 : 법무법인 세종 뉴스레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24. 03. 12.

[표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경력 인정 자격

구분	경력 인정 자격	인정기간
개인정보보호 경력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제14조에 따른 정보 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심사원	1년
	○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제5조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 전문인력	
	○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 자격 취득자	
정보보호, 정보기술 경력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1년
	○ 정보보안기사, 정보처리기사	6개월

* 각 자격 보유시 구분된 경력 내(개인정보보호 / 정보보호·정보기술)에서는 하나의 자격만 인정하며, 구분된 경력별 중복 인정은 가능

3. 국내 개인정보보호 분야 현황

- 정보통신기술(ICT)과 인공지능(AI) 등과 같은 신기술이 발달되고 융합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개인정보의 범위와 영역은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음
- 데이터가 산업 발전과 새로운 가치 창출의 동력으로 떠오르면서 ‘마이데이터’가 경제 발전의 핵심 사업으로 주목받고 있음
 - * 마이데이터 : 정보주체가 본인 데이터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자신의 통제권 하에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처리하는 제도로써,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발전적 형태의 적극적 프라이버시 권리
- 정부는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하여 그간 일부 분야에 도입했던 마이데이터를 전 분야로 확장할 계획에 착수하면서,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Digital Platform Government, DPG) 구현”을 국정과제로 채택하였으며 정보주체의 통제권 보장 및 권리 지원방안에 힘을 쏟고 있음
- 데이터는 기업의 자산이자 상품이 되기 때문에, 다양한 산업군에서 다른 산업과 데이터 결합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시도가 계속되고 있음. 그러나 미래의 자원이 될 데이터는 대부분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언제나 개인정보 침해사고의 위험이 뒤따르는 실태*임
 - * '23년 7월 기준, 최근 3년간 기업이 갖고 있는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건수는 약 6,500만 건 이상으로 집계²⁾되었으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각급학교 등 공공기관에서 신고한 개인정보 유출 건수는 395만 이상³⁾으로 나타났다
- 정부는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위해 '20년 2월 「개인정보 보호법」을 개정하여 가명정보의 개념과 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였으며, '24년 2월, 개인정보의 안전한 가명처리를 위해 법·제도, 기술, 절차

2) 3년간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400만건... 징계요구는 단 '1건', 연합뉴스 보도자료, 2023. 10. 15.

3) 기업고객 개인정보 유출 매년 1천만건 넘어... 3년 누적 6.5천만건, 뉴시안 보도자료, 2023. 10. 05.

등을 안내하는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의 개정 및 ‘가명정보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개정 등 가명정보 관련 법·제도 개선에 힘쓰고 있음

- 더불어, 기업과 기관들의 안전한 가명정보 결합을 지원하는 ‘가명정보 결합 종합지원시스템’을 운영하고,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는 기업과 기관들을 전방위적으로 돕기 위하여 ‘가명정보 활용 종합지원플랫폼’을 구축하였음
- '23년 9월에는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대응 매뉴얼」을 개정하여 개인정보 유출 피해확산 방지 및 정보 주체에 대한 피해구제를 위해 힘쓰고 있음
- '20.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으로 출범 이후 '23. 6월, 개인정보의 보호 및 정보주체의 권익 보장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2024-2026)」을 발표하였으며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3. 12월, 「2024년 개인정보보호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개인정보 보호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음 ([그림 3] 참조)

들어가기에 앞서 :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 비교 - 기술적 관점

-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은 일반 정보보호 기술을 기반으로, 개인정보의 생애주기 특성에 맞는 보호와 정보주체 권리보호를 위해 필요한 기술임
 - 정보보호 기술은 시스템·데이터의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술인 반면, 개인정보 보호 기술은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서 유출, 오·남용을 방지하고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술임
 - 두 기술은 활용하는 요소기술이 유사하더라도 보호 목적이 다르며, 정보주체의 권리보호 기술은 정보보안과 완전히 구분되는 기술임
- * (예) 동형암호 : (개인정보보호) 개인식별정보를 대체하는 비식별처리 기술로 활용
(정보보호) 중요 정보 노출을 방지하는 암호화 기술로 활용

[표 2] 개인정보보호·활용 기술과 정보보안 기술 비교⁴⁾

구분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	정보보호 기술
주요 보호대상	정보주체	ICT 인프라
보호 목적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기밀성·무결성·가용성 보장
기술개발 방향	개인정보의 보호와 안전한 활용 중심	시스템 보호 중심
프레임워크	수집 » 이용·저장 » 제공 » 파기	탐지 » 분석 » 대응 » 공유
정보주체 우선	O	X
보호를 위한 주요탐지 정보	개인정보	일반 정보

4) 개인정보 보호·활용기술 R&D 로드맵(2022~2026),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1. 11.

비전

국민 신뢰 기반의 디지털 대전환 선도

전략 1

데이터 경제시대 선도

| 과제1 |
개인정보로 가치를 창출하고
국민께 돌려드리겠습니다.

| 과제2 |
신뢰할 수 있는 신기술
이용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 과제3 |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촉진하겠습니다.

전략 2

개인정보 안심사회 구현

| 과제4 |
정보주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겠습니다.

| 과제5 |
공공부문 보호수준을
더욱 튼튼히 하겠습니다.

| 과제6 |
기업의 자율적인 보호활동을
전폭 지원하겠습니다

| 과제7 |
법과 제도를 엄정하고 신속하게
집행·운영하겠습니다.

전략 3

글로벌 데이터 신(新) 질서 주도

| 과제8 |
신뢰할 수 있는 개인정보
국외 이전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 과제9 |
디지털 대전환에 따른 개인정보
패러다임 전환을 선도하겠습니다.

| 과제10 |
개인정보 분야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해나가겠습니다.

[그림 3]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2024-2026) 체계⁵⁾

5)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2024-2026),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3. 06.



국내 개인정보보호 관련 전문인력 양성 현황



II

국내 개인정보보호 관련 전문인력 양성 현황

1. 대학·대학원 정규교육과정 운영 및 정부지원사업 현황

○ (정보보호 관련) 정규교육과정 운영 현황

- 2022년 대학·대학원의 정보보호관련 학과 현황 조사 결과⁶⁾에 따르면 전문대학 7개, 일반대학 45개, 대학원 58개로 총 110개 학과가 운영 중이며 2022년 전문대학 이상 정규교육기관의 재적 학생수는 8,245명으로 나타남

○ (정보보호 관련) 정부지원사업 운영 현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10만 사이버보안 인재양성 방안(2022년 ~ 2026년)⁷⁾ 발표
 - * 정규과정으로 1만명 양성 : (고급) 융합보안대학원(기존 8개교→12개교), (중급) 정보보호특성화대학(기존 3개교 » 10개교), (초급) 특성화고·전문대학(4,000명, 신규 사이버부사관 특화 정보보호 전문대학)
 - * 그밖에 특화교육으로 3.9만명, 재직자를 위한 사이버훈련장으로 2.5만명 및 지역 교육으로 2.6만명 양성 계획
- ※ 상기 현황들은 일반 정보보호와 관련한 인재 양성 현황이며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부분은 미포함되어 있는 실정임

- (개인정보보호 관련) 국내 개인정보보호관련 정규교육과정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교육부가 함께 지원하는 부처간 협력 사업으로 202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분야 혁신인재양성사업⁸⁾의 일환으로 유일하게 개설·운영중임([그림 4] 참조)

- 현재 총 5개 대학*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 개인정보보호관련 특화 교육과정을 운영 중

* 서울여자대학교, 강원대학교(강릉원주대학교),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중앙대학교(원주 한라대학교)⁹⁾

6) 2023 국가정보보호백서, 국가정보원 등 6개 기관 합동, 2023. 05.

7) '사이버 10만 인재 양성 방안'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2022. 07. 13.

8) 개인정보 포털, <https://www.privacy.go.kr/front/contents/cntntsView.do?cntsNo=293>

9) 괄호안은 컨소시엄 참여대학임

개인정보보호 분야 혁신인재양성사업이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함께 신산업 분야 등 산업·경제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혁신인재 양성을 위해
개인정보보호 분야 대학 특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국내 우수 대학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 참여대학



• 추진 목표 및 주요 전략

“ 개인정보보호 실무역량을 갖춘 ”
종합 **전문인재 양성**



• 사업현황

총 사업기간	2022년 3월 ~ 2025년 2월까지 (3년간)
지원내용	1. 개인정보보호·활용에 특화된 전공과정 개설 및 운영 2. 산·학 협력 기반 체험 교육과정 연계 3. 개인정보보호 분야 취·창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4. 실습환경 및 인프라 구축 등 비용 지원

[그림 4]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주관 개인정보보호분야 혁신인재양성사업 현황



국내 개인정보보호 관련 자격제도 현황



III

국내 개인정보보호 관련 자격제도 현황

우리나라의 자격제도는 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가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국가자격과 국가 외의 자가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민간자격으로 운영되고 있음

1. 국가자격 운영 현황

-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분야의 국가자격은 현재 없으며, 유사 분야로 정보보안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정보보안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이 운영 중

2. 민간자격 운영 현황 ([표 3] 참조)

- 현재 ‘개인정보보호’ 및 ‘일반 정보보호’분야의 공인 민간자격은 없으며, 127개의 등록 민간자격(개인정보관리사(CPPG), 개인정보보호사 등)만 존재('24.2 기준)
- 등록 민간자격 중 '22년 신규 취득자가 존재하는 자격은 5개*이며, 이 중 응시자 100명 이상 자격은 3개

* 개인정보관리사(CPPG)(한국CPO포럼), 개인정보취급사(CPPF)(한국CPO포럼), 개인정보보호사(한국정보평가협회), 개인정보보호교육강사(한국기업인재연구소), 개인정보보호지도사(한국교육컨설팅개발원)

구분	개인정보관리사 (CPPG)	개인정보취급사 (CPPF)	개인정보보호사	개인정보보호법 교육강사
운영기관	(사)한국CPO포럼	(사)한국CPO포럼	(사)한국정보평가협회	(주)한국종합교육원
등록시기	2010년 민간자격등록	2015년 민간자격등록	2011년 민간자격등록	2017년 민간자격등록
검정과목	■ 개인정보보호의 이해 (10문항) ■ 개인정보보호 제도 (20문항) ■ 개인정보 라이프사이클 관리(25문항) ■ 개인정보의 보호조치 (30문항) ■ 개인정보 관리체계 (15문항)	■ 개인정보보호의 이해 (8문항) ■ 개인정보 생명주기 (10문항) ■ 개인정보 보호조치 기준(10문항) ■ 정보주체 권리보장 (7문항)	■ 개인정보보호 및 제도 (30문항) ■ 개인정보관리 및 관리체계(30문항) ■ 개인정보보호 대응 (30문항)	-
	■ 100문항/120분/5지선다 ■ 과목당 40% 이상, 총점 60% 이상	■ 35문항/60분/4지선다 ■ 총점 60% 이상 35문항 중 21문항 이상	■ 90문항/90분/5지선다 ■ 과목당 40%이상, 총점 60% 이상	-

구분	개인정보관리사 (CPPG)	개인정보취급사 (CPPF)	개인정보보호사	개인정보보호법 교육강사
응시료	130,000원	30,000원	50,000원	150,000(교육비)
시험방식	현장시험	온라인 시험	현장시험	無시험 (현장교육 2시간 이수)
취득자수 ('22년)	누적 6,763명 ('22년 589명 합격/ 2,254명 중)	누적 3,348명 ('22년 127명 합격/ 183명 중)	누적 1,113명 ('22년 78명 합격/ 119명 중)	누적 920명 ('22년 11명 합격/ 11명 중)
문제출제 방식	매회 신규출제 (법개정·환경변화로 재활용 불가)	문제은행 구성·발체 (직전 시험문제 제외)	문제은행 구성·발체 (직전 시험문제 제외)	-
출제위원	- 문제출제 전문가풀 운영 (약 30여명) - 매회 15명 정도 출제 - 검토위원 풀 별도 운영	학계, 산업계 등 인력으로 출제위원 전문가 풀 운영 (5명)	학계, 산업계 등 인력으로 출제위원 전문가풀 운영 (25 ~ 30명)	-
24년도 검정계획	3회 운영	5회 운영	12회 운영	매달(수요발생시)
사후관리	자격 취득 후 2년마다 40시간 이상의 교육이수를 해야 자격유지 가능	자격 취득 후 2년마다 8시간 이상의 교육이수를 해야 자격 유지 가능	없음	없음
공인자격 전환 시도	2013년 공인자격 전환 추진, 서류심사는 통과했으나 최종 심의에서 탈락함(실기시험 관리 방안 부재 자격 수수료)	없음	2016년부터 3차례 공인 전환 추진했으나 탈락함	없음

[표 3] 주요 개인정보보호 민간자격 운영 현황(2022년 기준, 자료 출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이중 가장 활용도가 높은 개인정보관리사(CPPG)의 경우 개인정보 영향 평가 수행인력 및 ISMS-P 인증 심사원 자격요건으로 포함하고 있으며, 현재 기업(300여개)에서 채용 우대 중임

[표 4] 개인정보관리사(CPPG) 법적규정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제5조 (영향평가 수행인력 자격) 제1항 제1호	① 영향평가 수행인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일반수행인력과 고급수행인력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일반수행인력의 자격은 다음 각 목과 같다. 나. 한국CPO포럼이 시행하는 개인정보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개인정보 영향평가 관련 분야 수행 실적이 있는 사람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제13조(인증심사원 자격 신청) 제1항	① 인증심사원 자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4의 인증심사원 자격 신청 요건을 갖추고 인터넷진흥원이 공고하는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7호 서식의 인증심사원 자격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4] 인증심사원 자격 신청 요건 - 개인정보보호 경력 : 개인정보관리사(CPPG) > 1년

[표 5] 주요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분야 자격 현황(2022년 기준, 자료 출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구분			시행기관
국가자격	국가기술자격	정보보안기사 / 정보보안산업기사	한국인터넷진흥원
	국가전문자격	-	-
국내민간자격	등록민간자격	개인정보관리사 (CPPG)	한국CPO포럼
		개인정보취급사 (CPPF)	
		개인정보보호사	한국정보평가협회
		개인정보보호법교육강사	한국기업인재연구소원
		개인정보보호지도사	한국교육컨설팅개발
		※ 현재 127개 민간자격 등록·시행 중 ('24.2월 기준)	
		※ 민간 자격은 타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무관하면 주무 부처에 등록 가능 (자격기본법§17)	
	공인민간자격	-	-
		※ 등록민간자격 중 우수한 자격을 국가가 공인	

구분		시행기관
국제자격	공인정보시스템보안전문가 (CISSP)	국제정보시스템보호인증협회 (ISC2)
	국제공인정보시스템감사사 (CISA)	국제정보시스템감사통제협회 (ISACA)
	국제공인정보보안관리자 (CISM)	
	국제공인 IT거버넌스전문가 (CGEIT)	
	국제공인정보시스템통제위험전문가 (CRISC)	국제개인정보전문가협회 (IAPP*) * 美 비영리단체
	공인개인정보보호전문가 (CIPP)	
	공인정보보안관리자 (CIPM)	
	공인정보보호기술자 (CIPT)	

3. 개인정보보호관련 NCS(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국가직무능력표준) 운영 현황

- 개인정보보호 분야는 현재 정보통신(대분류) » 정보기술(중분류) » 개인정보보호(소분류)로 운영 중 ([그림 5] 참조)
 -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23년도에 NCS 품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개인정보보호가 소분류로 신설
- 현재 세분류로 개인정보보호관리운영, 개인정보가명익명처리, 개인정보인증평가 3개 직무가 개발되어 있으며 현재 지속적으로 새로운 직무들을 개발 중에 있음

20. 정보통신

대분류 선택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능력단위
01. 정보기술	01. 정보기술전략-계획	01. 개인정보보호관리운영 +	01. 가명·익명 법제도분석
02. 통신기술	02. 정보기술개발	02. 개인정보가명익명처리 -	02. 가명·익명처리 기획
03. 방송기술	03. 정보기술운영	03. 개인정보인증평가 +	03. 가명·익명 위험관리
	04. 정보기술관리		04. 가명·익명처리
	05. 정보기술영업		05. 가명정보 결합·반출
	06. 정보보호		06. 가명·익명처리 적정성 검토
	07. 인공지능		07. 가명·익명 사후관리

[그림 5] 개인정보보호관련 NCS(국가직무능력표준) 분류 체계도(<https://www.ncs.go.kr/index.do>)

- 개인정보보호관련 직무 소개 - 개인정보보호관리운영, 개인정보가명익명처리, 개인정보인증평가
(<표 6> 참조)

[표 6] 개인정보보호관련 NCS(국가직무능력표준) 운영 현황

직무명	개인정보보호관리운영	개인정보가명익명처리	개인정보인증평가
직무정의	개인정보보호관리운영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정책에 따라 개인정보를 생명주기별로 안전하게 보호하고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일이다.	개인정보 가명·익명처리란 개인정보를 법령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하여 적절한 수준으로 가명·익명처리를 수행하고 사후관리를 하는 일이다.	개인정보인증·평가는 개인정보처리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기준 준수 여부를 심사하고 평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일이다.
NCS 능력단위	• 개인정보보호 법령·정책 분석 • 개인정보보호 기획 • 개인정보보호 위험관리 • 개인정보보호 운영 • 개인정보 생명주기 관리 • 개인정보 수탁자 관리	• 가명·익명 법제도분석 • 가명·익명처리 기획 • 가명·익명 위험관리 • 가명·익명처리 • 가명정보 결합·반출 • 가명·익명처리 적정성 검토 • 가명·익명 사후관리	• 개인정보 인증심사 준비 • 개인정보 인증심사 착수 • 개인정보 관리체계 진단 • 개인정보 안전조치 진단 •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보호조치 진단 • 개인정보 인증심사 종료 • 개인정보 인증심사 사후관리
능력수준 (최저 1 ~ 최고 8)	5~8	5~7	6~7

IV.

시사점 및 제언



IV

시사점 및 제언

1. 개인정보보호 관련 전문인력 양성 부문

- **(정보보호 현황)** 지난 2022년 7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정예 사이버 인력 양성으로 안전한 디지털 강국 구현을 위하여 사이버보안 10만 인재 양성 방안¹⁰⁾을 발표한 바 있음
 - 이종 재직자 역량 강화를 위해 6만명을 신규 공급인력으로 정규과정 1만명 등 4만명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일반 정보보호가 아닌 개인정보보호에 특화된 인력양성 방안은 현재 부재한 상황임
- **(개인정보보호 현황)**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난 2022년부터 시행해오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분야 혁신인재양성사업을 통해 2025년부터는 매년 150~200여명의 전문 인력을 배출할 예정이라고 하지만 매년 늘어나는 수요에 부합하기엔 여전히 역부족인 상황임
- **(시사점 및 제언)** 지난 2월 16일자 디지털데일리 보도자료¹⁰⁾에 따르면 현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개인정보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전략을 마련, 이행할 방침이라고 밝힘
 - 개인정보 학사 전공 운영 및 석·박사 전공 개설
 - 가명정보 안전 활용에 필요한 전문가를 양성하자는 취지로 예비자, 실무자, 전문가 등 정규 과정을 운영하고 기업 및 대학에서 관련 특강 시행
 - 개인정보 보호에 특화된 ‘국가 자격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연구 중
 - ※ 향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전략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에 특화된 체계적인 전문인력을 양성해 줄 것을 기대
 - 산업에 적합한 인적자원 개발·관리·활용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신규 출범한 정보보호 인적자원 개발위원회(ISC)는 정부가 추진하는 인력양성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인력 현황 및 이슈의 정확한 파악과 함께 인력 미스매칭 해소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산업 내 실질적인 인력현안 해결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2. 개인정보보호관련 자격 제도 부문

- **(국가자격 현황)**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분야의 국가자격은 현재 없으며, 유사 분야로 정보보안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정보보안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이 운영 중
- **(민간자격 현황)** ‘개인정보보호’ 및 ‘일반 정보보호’분야의 공인 민간자격은 없으며, 127개의 등록 민간자격(개인정보관리사(CPPG), 개인정보보호사 등)만 존재(’24.2 기준)
- **(시사점)** 현재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국가자격과 공인 민간자격은 없는 상태이며 다만 민간자격과 관련하여 등록 민간자격으로 개인정보관리사(CPPG)가 가장 활용도가 높은 실정임

10) [2024 개인정보정책] ‘전문CPO제도’ 3월 도입... 세부 자격요건 명시, 디지털데일리 뉴스 보도자료, 2024. 02. 16.

- (제언) 앞서 언급한 2월 16일자 디지털데일리 보도자료에 따르면 현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개인정보보호에 특화된 국가자격 제도 도입에 대해 연구 중이라고 밝힌 바 있음
 - 국가자격은 국가전문자격과 국가기술자격으로 나뉘며 국가전문자격의 경우 의사나 변호사 등 의료나 법률 분야의 별도 입법이 필요한 반면 국가기술자격의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신설이 가능
 - 한편 등록 민간자격의 경우 정부에서 공인기준에 부합하는 우수한 민간자격을 교육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자격정책심의회를 통하여 공인 민간자격으로 부여 가능
 - 따라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중심으로 기존 등록 민간자격 가운데 NCS, 산업계 수요 부응 정도, 검정 실적 혹은 수준 등을 고려하여 공인자격으로 전환하거나 새로운 국가기술자격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전문인력 수요에 발 빠르게 대처하기 위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
 - 더불어 정보보호 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는 산업 내 직무변화를 빠르게 파악하는 동시에, 우수 인력 성장의 기반이 되는 자격제도가 체계적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참고문헌



2021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법무법인 세종 뉴스레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24. 03. 12.

개인정보 보호·활용기술 R&D 로드맵(2022~2026),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1. 11.

3년간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400만건... 징계요구는 단 '1건', 연합뉴스 보도자료, 2023. 10. 15.

기업고객 개인정보 유출 매년 1천만건 넘어...3년 누적 6.5천만건, 뉴시안 보도자료, 2023. 10. 05.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2024-2026),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3. 06.

2023년 개인정보보호 연차보고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3. 10.

2023 국가정보보호백서, 국가정보원 등 6개 기관 합동, 2023. 05.

'사이버 10만 인재 양성 방안'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2022. 07. 13.

[2024 개인정보정책] '전문CPO제도' 3월 도입... 세부 자격요건 명시, 디지털데일리 뉴스 보도자료, 2024. 02. 16.





정보보호 인적자원개발위원회
Industrial Skills Council



ISSUE REPORT

(05717)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35, IT벤처타워 서관 14층
정보보호 인적자원개발위원회